



제 3 4 0 회 정례회
제1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
2023. 06. 19.(월)

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264
제안일자	2023. 05. 31.
회부일자	2023. 06. 02.

행정안전복지위원회
전문위원실

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, 보건서비스, 청소년복지 분야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행복재단 및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.
-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, 기능,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에 청소년육성 및 지원을 추가함(안 제1조)
- 경북행복재단의 수행사업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및 시설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)
- 경북행복재단의 운영재원에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을 추가함(안 제15조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04.20. ~ 05.10.(경상북도 공고 제2023-936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☐ 제안이유 및 필요성

- 경상북도는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하여 복지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은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통합에 따른 업무, 기능,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☐ 주요내용

- 본 개정 조례안은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목적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,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 관련 사업 추가,

운영재원에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 추가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·승인 기한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.

- 이는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청소년 육성 업무를 경북행복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및 사업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.

○ 안 제4조는 경북행복재단의 사업에 '도와 시·군이 위탁 또는 의뢰 하는 시설의 운영'과 '「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2조제1호1)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및 시설운영'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.

- 이는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에 따른 청소년육성 업무를 재단 사업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다만, 안 제4조제1항제9호의 도와 시·군이 위탁 또는 의뢰하는 시설의 운영을 사업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시·군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 운영을 위탁 또는 의뢰받는 시설을 모두 운영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.

-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시설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나, 행복재단은 경상북도가 출연한 법인으로서 지원

1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기관입니다. 즉,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, 평가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입니다.

- 시설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경우, 민간 복지법인이나 시설과 경쟁하게 되어 행복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, 나아가서 민간의 사회복지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,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2)에서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’을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운영을 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아울러, 시·군에서 행·재정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할 경우 재단과 경상북도의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.
- 또한,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준용한 「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제1호는 청소년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,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따라서, 제1조 목적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

2) 제4조(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) ① ~ ④ (생략)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~ ⑩ (생략)

보호 등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시설운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~ 8. (생략) 9. 도와 시·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<신설> <신설> 10. (생략)	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- ----- ----- -----. 1.~ 8. (현행과 같음) 9. 도와 시·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및 시설운영 10. 「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2조1호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및 시설운영 <신설>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	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- ----- ----- -----. 1.~ 8. (현행과 같음)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</u> 11. 「경상북도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청소년시설운영</u> 12. (개정안 제11호와 같음)

○ 안 제15조는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을 경북행복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안 제17조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3)을 준용하여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종합의견

○ 경상북도는 2022년 7월 ‘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개혁’을 발표 하였습니다.⁴⁾

○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통합하기 위해 각각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경상북도는 경북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의 통합을 2023년 12월 까지 완료하기 위해 복지분야 T/F 구성하고 관련기관 설명회 개최하였으며, 통합계획을 수립하고, 통합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, 통합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3) 제18조(예산의 편성 등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,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4) 문화, 복지, 호국, 산업,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 관하여 ‘1개 분야 1개 재단’ 추진

- 본 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,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 관련 사업과 청소년시설 운영 추가, 운영재원에 청소년 시설 운영 수익금 추가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·승인 기한 변경 등 통합이후에도 양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지원기관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 운영은 제외하고, 신설되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단 사업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